

2018년 사외이사의 선임 현황 및 이사회 실태 분석

윤 소 정 연구원 (sjyoon@cgs.or.kr)

- ▶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사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운영 실태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음
- ▶ 사외이사의 장기연임, 독립성 훼손, 과다 겸임 등의 이슈에서 다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기업은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주주 권리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공시의 질적 측면의 충실도를 높여 주주와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완화하고, 주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기업 환경에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서론

- 우리나라 이사회는 법률 개정(상법 제382조, 상법 제542조의8 등)을 통해 점차 선진화된 구조로 변모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운영 제도와 실태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사외이사의 경우 아직까지 지배주주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질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보완하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최근 불거지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리스크 및 오너리스크로 인해 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며, 그 중 사외이사는 전문성의 기여 및 적절한 견제·감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다수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차원 및 기업가치 훼손의 방지를 위해서 능동적인 사외이사의 역할이 대두되는 바, 독립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실제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를 기준(이하 KOSPI 100)으로 이사회의 실태 중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independence) 및 다양성(diversity), 전문성(expertise)의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함¹⁴⁾
 - 2018년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신규 사외이사의 현황과 2017년 기존 이사회

14) 이사회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중 사외이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이사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함

이사회 실태 파악

- KOSPI 100의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18년 이사회 구성을 비교하여 사외이사의 선임 및 퇴임에 따른 구성 변화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함
- 2017년 KOSPI 100의 전체 회사의 사외이사 수는 428명에서 2018년 439명으로 증가하였으며,¹⁵⁾ 이사회 구조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4/7 구조가 41%로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남¹⁶⁾

가. 사외이사 재임기간 현황

- 2018년 상반기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수는 93명, 재선임 수는 103명이며, 2017년 이사회 중 사외이사들의 최초 선임일로부터 평균 재임기간은 40.02개월, 2018년 이사회 중 사외이사의 변동(선임 및 퇴임)을 고려한 평균 재임기간은 29.79개월로 조사됨

〈표 1〉 KOSPI 100 이사회 운영 실태

(2018년 3월 31일 기준, 단위: 개, 명, 개월)

	오너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오너 없는 기업	전체
전체 기업(KOSPI 100)	75	16	4	5	100
사외이사 선임 기업 수	58	15	3	3	79
사외이사 신규 선임 수	64	21	4	4	93
사외이사 재선임 수	75	25	0	3	103
최초 선임일로부터 평균 재임기간(2017 이사회)	43.75	29.56	30.12	29.29	40.02
최초 선임일로부터 평균 재임기간(2018 이사회)	32.44	19.69	23.86	25.79	29.79
장기연임 사외이사 수 (2017년 이사회)	33	2	0	0	35
장기연임 사외이사 수 (2018년 이사회)	23	3	0	0	26

- 기업 특징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7년 사외이사의 평균 재임기간의 경우, 금융회사는 29.56개월, 오너 없는 기업은 29.29개월인 반면, 일반기업은 43.75개월로 나타나 평균 1년 정도 재임기간의 차이를 보임

15) 즉, 2018년 회사 1개별 평균 사외이사 4.39명 선임

16) 다음으로 5/9 구조 15%, 3/5 구조 10%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장기연임(6년 이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재연임이 드물거나 연임하여도 연임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사외이사의 turn over 주기가 빠른 것으로 파악됨
- 오너 없는 기업 역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합의체인 이사회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주요주주(주로 기관투자자)의 적절한 감시·견제를 통하여 내부경영진들과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유인이 큼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외이사의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 연수가 7년(금융사는 5년)을 초과하는 자를 독립성 저해에 따른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 바,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2017년 이사회에서 35명의 장기연임 사외이사(8.18%)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주주총회에서 장기연임 사외이사가 9명 감소(임기만료 및 중도사임)하여 평균 계산상의 극단치(outlier)가 다소 해소됨¹⁷⁾(단, 공기업 및 오너 없는 기업에서는 장기연임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았음)
- 최고 19년간 장기 재임 중인 사외이사가 존재하는 상장사가 있었으며, 10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자를 사외이사의 과반수 이상 보유한 상장사도 5개로 조사됨(모두 오너기업에 해당)
- 그러나 2018년 주주총회에서 장기연임이나 독립성 훼손 등을 우려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부결이나 주주 제안은 1건도 없었으며¹⁸⁾, 모두 회사측 원안 가결됨

나. 사외이사 겸임 현황

-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79명(전체 사외이사 대비 18.46%), 2018년 103명(전체 사외이사 대비 23.46%)으로 집계됨
- KOSPI 100 기업 중 감사위원회가 없는 기업¹⁹⁾ 6개사(모두 오너기업)를 제외한 94개사에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2/3 이상 충족해야 함. 2017년 이사회 기준으로 전체 사외이사 중 310명(72.44%)이 감사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음
 -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당해 기업의 높은 이해가 필요한 업무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므로 다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어려운 환경임
 - 더불어 상법시행령 제34조에서도 사외이사의 겸임을 최대 2개로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본업이 존재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여러 개의 겸직을 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17) 2017년 이사회에서 장기연임 후 퇴임한 사외이사 9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16.11개월(약 10년)로, 이들이 퇴임 후 2018년 이사회의 평균 재임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18) 2018년 POSCO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후보 자진사퇴로 안건 폐기됨

19) 기업 별도 자산 기준 2조원 미만인 경우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에 의한 상근감사제도가 필수적이나, 상법 542조의10 제1항 단서에 의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절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상근감사 설치가 의무사항이더라도 그것이 면제 가능함

이므로 사외이사의 충실도 측면에서 다수의 겸임은 우려 요소로 작용함

〈표 2〉 KOSPI 100 사외이사 겸임 현황²⁰⁾

(2017년 9월 30일 기준 및 2018년 3월 31일 기준, 단위: 명)

	오너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오너 없는 기업	전체
겸직 사외이사 수 (2017년 이사회)	62	16	0	1	79
겸직 사외이사 수 (2018년 이사회)	84	16	0	3	103

다. 사외이사의 다양성²¹⁾

- KOSPI 100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이사회의 사외이사들과 2018년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선임배경(background) 및 전문성(expertise)을 살펴봄
- 사외이사 주요경력에서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향이 있을 경우 항목별로 중복 집계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함
- KOSPI 100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의 경력사항을 〈표 3〉에 분석한 결과, 전·현직으로 활동 중인 교수출신 학계는 198명(3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조계 146명(26.17%), 정부관료 109명(19.53%) 순으로 많이 나타남
 - 감사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4개사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그룹사의 오너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회사들을 살펴보면, 금융사 1개 외에 제조업 기반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가 선임하는 경향을 보임
 -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10개사 중 2개사 외에 모두 금융회사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성 기여도 측면에서 업종의 특징과 부합되지 않는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로는 1) 제약회사에 해병대 사단장이 재임하는 경우, 2) IT회사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재임하는 경우, 3) 식료품 유통업에서 기계공학과 교수가 재임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해당 공시 정보만으로 사외이사의 선임배경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의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규정하는 바, 독립성 훼손이 의심되는 전직 임직원 또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12명으로 파악됨

20) 본업을 제외한 등기임원 기준으로 겸직 판단

21) 5페이지의 〈표 3〉 참조

〈표 3〉 KOSPI 100 사외이사 주요 경력 현황

(2017년 9월 30일 기준 및 2018년 3월 31일 기준)

대분류	소분류	사외이사 수(명)	소계별 비율 (전체 비율)(%)	기타 및 소계
학계	경영	81	40.91(14.52)	• 경영학의 세부 전공별로 재무·회계·마케팅 순으로 다수 차지
	경제	25	12.63(4.48)	
	공학	30	15.15(5.38)	
	법학	21	10.61(3.76)	
	의학	4	2.02(0.72)	
	행정	5	2.53(0.9)	
	기타	32	16.16(5.73)	198(35.48%)
법조계	고문	50	34.25(8.96)	146(26.17%)
	대법관 및 재판관	3	2.05(0.54)	
	변호사	61	41.78(10.93)	
	판·검사	32	21.92(5.73)	
정부관료	장관	25	22.94(4.48)	• 금융공기업 세부 항목 - 한국은행 4 - 예금보험공사 4 - 한국증권금융 2 - 산업은행 1 - 수출입은행 1
	국세청, 관세청	21	19.27(3.76)	
	재정경제부	13	11.93((2.33)	
	금융감독원	10	9.17(1.79)	
	공정거래위원회	11	10.09(1.97)	
	감사원	4	3.67(0.72)	
	금융공기업	12	11.01(2.15)	
	국회의원	8	7.34(1.43)	
	군인	3	2.75(0.54)	
	기타	2	1.83(0.36)	
기업	금융권	32	42.67(5.73)	75(13.44%)
	비금융권	43	57.33(7.71)	
언론		11		11(1.97%)
회계·세무법인		19		19(3.41%)
총계		558		558(100%)

○ 2017년 이사회에서 임기만료 및 중도퇴임으로 인한 사외이사(70명)의 주요경력과 2018년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79명)의 주요 경력을 비교해본 결과, <표 4>에 따른 대분류로 나누었을 때 32명이 동일한 직군에서 선임되었으며, 소분류로 나누었을 때에도 24명이 일치함

- 이는 사외이사 선임 시 기업에서 일정 직군별 후보군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며, 당해 기업에 직면한 환경에 필요한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다른 직군(예를 들어, 회계학 교수(학계)와 회계법인의 회계사(회계·세무법인))은 정확한 분류를 위해 매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은 매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공기업의 경우 기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시가 부족한 실정이며, 일관된 직군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추세는 확인되지 않음

〈표 4〉 KOSPI 100 선임 및 퇴임 사외이사의 직군 비교

(2017년 9월 30일 기준 및 2018년 3월 31일 기준, 건)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매칭	소분류 매칭
학계	경영	14	6
	경제		1
	공학		2
	법학		1
법조계	고문	7	-
	대법관 및 재판관		1
	변호사		4
	판·검사		-
정부관료	장관	6	-
	금융감독원		2
	공정거래위원회		1
	금융공기업		1
기업	금융권	5	1
	비금융권		4
합계		32	24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를 기준으로 기업 성격별 분류를 통해 이사회 구성 현황 및 2017년 이사회와 2018년 이사회 비교를 통해 독립성, 다양성 측면에서 실태를 조사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외이사의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 연수가 7년(금융사는 5년)을 초과하는 자를 독립성 저해에 따른 결격 사유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외이사가 약 8%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주의 이사회 감시(monitoring)활동이 더욱 요구됨
- 상법시행령에 따라 사외이사직의 겸임을 2개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고도의 전문성 및 당해 기업의 높은 이해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겸임의 개수로 판단하기보다는 겸임의 정도를 토대로 과도한 겸임을 우려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출자한 재단 등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자가 당해 오너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겸임이므로 사전적인 선임 배경에 대한 공시가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기업은 일정 직군별 후보군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며, 당해 기업에 직면한 환경에 필요한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이사회 정보 파악할 수 있는 이사회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공시 양식은 비교적 통일되어 있으나 기업별로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충실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됨
- 사외이사의 중도퇴임이나 임기만료 등에 대한 고지가 해당 분기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²²⁾, 선별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정보만을 기입하는 양태를 보이는 기업들이 다수였음
- 향후 주주들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의 질을 높이며 주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22) 그밖에 재직기간 기입에 있어 최초선임일을 기입하지 않고 재선임일로 적어 실제 재직기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거나, 등기임원의 겸임을 미공시하는 등의 주요 정보들이 보고서에서 누락됨